

청년 디지털일자리사업 부정수급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

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부정수급 결정으로 사업주에게 행정절차법 제21조(처분의 사전통지)에 의거하여 제재부가금 부과 처분 및 보조금 지급 제한에 대한 처분 사전통지(의견제출통지) 문서를 우편 발송하였으나,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.

2026. 7. 22.

대구지방고용노동청 

1. 건 명: 2021년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부정수급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
2. 근 거: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 및 제33조의2, 행정절차법 제14조
3.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

사업장명 (대표자)	사업자등록번호	서류의 명칭	서류의 주요내용			송달 불능사유	주소
			예정된 처분 제목	처분 사유	처분내용		
주식회사 연**릿지 (도*찬)	58*-86-019**	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	청년디지털일자리 사업 제재부가금 부과, 지급제한 등	허위근로 등으로 보조금 19,000,000원 부정수급	제재부가금 95,000,000원 부과, 보조금 지급 제한 5년	소재불명	경산시 삼풍로/ 경산시 대학로 (이하 생략)

4. 공고 기간: 2026. 7. 22. ~ 2026. 8. 5.(15일간)
5. 기타사항은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고용센터 지대근(☎053-667-6106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